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331
Fax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Person in charge:
- JEON Gyejeong (Part I Safety)
- KIM Hoijun (Part II Pollution prevention)

No : 2020-IMO-05
Date : 29 December, 2020

제목 : 여름철 한시적으로 제한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C범주(Category) 화물선에 대한 Polar Code 적용 안내 (Polar Code I-A/1.3.3 적용선택) _Add.1

1. 배경

본 기술정보는 2019년 발행한 기술정보 '2019-IMO-04'*에 추가하여, 표제 관련 선박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지침이며, 이는 발행 즉시 유효합니다.

* 한국선급 홈페이지(www.krs.co.kr)에서 확인 가능함

2. 현행 (기술정보 '2019-IMO-04' 요구사항)

Polar Code I-A/1.3.3 요건에 따라 C 범주(Category) 화물선의 경우, 동 코드 I-A/1.5 요건에 따라 선주의 운항평가(Operational Assessment)의 결과가 이 코드를 만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비나 구조변경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선주가 확약하는 경우, 이 코드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지 문서검증(Documented Verification)만으로도 극지선박증서(PSC)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요구사항

상기에도 불구하고 Polar Code 8.3.3.1.2항에서 요구하는 Insulated Immersion suits는 운항평가의 결과에 관계없이 극지선박증서가 발행되는 모든 선박에 비치되어야 한다는 극지해역 내 국가의 일부 PSCO 들의 강력한 지침이 있었으며, 또한 타 IACS 선급들에 의견 조회 결과, 하기 두 장비는 Polar Code가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비치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 Immersion Suit가 본선에 비치된 경우, 비치된 모든 Immersion Suit는 반드시 Insulation Type 이어야 함 - Polar Code 8.3.3.1.2항
- 항공용 주파수(121.5 및 123.1 MHz)를 포함하는 Two-way VHF – Polar Code 10.3.1.3.2항

따라서 선주의 운항평가 결과 추가적인 장비나 구조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상기 두 장비는 반드시 비치하여 PSC 및 각종 검사 수검 시 결함사항으로 식별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에 선주/운항자 및 현장 검사원의 상세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선주/운항자 조치사항

하기 (c)항 및 (d)항에서 언급하는 문서 및 장비를 준비, 본선에 비치한 후 극지선박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지부에 신청해야 하며, 검사 신청 시 (c)항에 나열된 문서 사본을 지부에 함께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함

(b) 현장 검사원 조치사항

선주 및 운항자로부터 극지선박증서 발급 신청을 접수한 경우, 사전에 하기 (c)항의 문서들이 Polar Code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하기 (c)항 및 (d)항에 나열된 문서, 장비, 관련 증빙서류 등이 본선에 적절히 비치되었는지 확인 후 증서를 발행함

(c) 문서검증 사항

- ① 선주의 운항평가(Operational Assessment) 시행여부 및 결과확인
 - Ship's Category: Category C
 - Polar Code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하기 (d)항에서 요구하는 장비 이외 추가적인 장비나 구조변경이 불요하다는 선주의 운항평가 결과
 - 얼음이 없는 지역에서만 운항(Ice Free Waters)
 - 저온의 공기에서 운항하지 않음(최저 MDLT -10°C 이상 해역 내 운항)
 - 위도 80도 이상 해역에서 운항하지 않음
 - 운항평가 방법명시(e.g. POLARIS, AIRSS, Ice Certificate 등)
 - 최대예상구조 시간(5일 이상 지정되어야 함)
- ② 극지운항매뉴얼(PWOM) 및 관련자료 본선 비치여부 확인(운항평가결과 반영)
- ③ 항로, 항해의 시기 및 기간을 포함한 항해계획(Voyage Planning)
- ④ 유효한 선급증서 및 협약증서의 유지 및 비치
- ⑤ 구명설비 및 항해통신 장치의 형식승인 증서

(d) 필수 보유 장비 및 증빙서류

- ① Immersion Suit가 본선에 비치된 경우, 비치된 모든 Immersion Suit는 반드시 Insulation Type 이어야 함
- ② 항공용 주파수(121.5 및 123.1 MHz)를 포함하는 Two-way VHF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관련 업계

(Distributions : KR surveyors, Ship owners, Other relevant parties)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